

##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처리 지침

### <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>

- ◆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운행정보(운행 일시·목적 및 경로, 운수종사자 이름 및 운전자격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)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운행(「여객법」 제21조제9항, 2015.1.6.신설)
  - \* 「여객법」 제76조 및 「여객법 시행령」 제38조에 따라 시·도 조합에 위탁 발부 중
- ◆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신고서에 서류 [운송계약서, 운행계획서(운행경로 포함)] 를 첨부, 조합에 제출하여 운행기록증 2부를 발부받아 1부를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외 중앙 하단에 부착하고,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관(「여객법 시행규칙」 제44조의5, 2016.1.6.신설)

### □ 운행기록증 미부착 단속기간 및 단속방법

-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「여객법」 시행과 동시에 운행기록증을 발급 및 부착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중 단속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 등 지자체에서는 관내에 등록되어 운행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(「여객법」 제21조, 제85조)
  - \* 운행기록증과 관련된 확인서류(배차지시서, 운송수입금 입금, 유류·정비비 지출현황 등)

### □ 입법예고 되었던 운행기록증 검증에 필요한 서류 보관업무가 제외되었는데 단속시 무얼 기준으로 하는지?

- 검증에 필요한 서류(자동차 할부금 납부기록, 운송수입금 입금현황, 유류비·정비비·급여지급현황) 보관업무가 각 지역업체마다 비정형화된 문서양식문제로 관련법 조항에선 제외되었다 해도
  -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과 대조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전반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함.

□ **아래사항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행기록증 미부착 또는 기재내용 불일치 할 경우 처리방법은?**

- 야간 및 주말 등 근무시간외 갑작스런 계약체결로 인한 경우
- 운전자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한 운전자가 변경된 경우
- 차량 이상(사고 및 고장) 등으로 인한 차량이 변경된 경우
- 시·도 조합사정으로 인해 운행기록증 발급시스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

- 업체와 운전자는 불가피성(미부착 및 내용 불일치 사유)을 현장에서 소명한 후, 변경사항은 업무개시후 즉시 보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운행정보신고내용, 운송계약서, 고장수리내역 등)를 제출하여야 할것임

□ **운행기록증에 표시된 경로와 달리 계약자(손님)의 요구나 기상이변 등으로 운행 중 일정 및 운행경로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처리방법은 ?**

- 근무시간에는 변경내용을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여 운행기록증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하고, 부착한 운행기록증은 수기로 변경내용 기재후 운행하며, 비근무시에는 현장소명과 운행완료 후 사후보완

□ **차량 운행후 차고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운행 시 운행기록증 발급후 미부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원본만 가능한지 ?**

- 운행기록증 원본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복사 및 팩스본 부착 가능(원본 미부착 소명 필요)

□ **운행기록증을 차량앞면 중앙하단에 부착할 경우, 운전시야 확보가 어려워(일부차량) 사고위험이 있는데 부착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?**

-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우선 확보되어야하며 운행기록증으로 인한 운전방해가 발생되지 않게 차량전면에서 부착위치 변경가능
- 원칙적으로 A4(210mm×297mm)가 적용되나 운전시야 확보 등을 위해 1/2로 축소 변경하여 부착가능(운행기록 발급시스템에 반영 예정)

□ **운행기록 신고와 운행기록증에 주요 운행경로를 전국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아 운행하여도 가능한지 ?**

- 운행기록증의 주요경로를 전국으로 표기해 운행하는 것은 곤란하며, 주요 도시명(기초자치체 3~4개 표시)을 기재하여 운행해야 할 것임

□ **운행기록증과 운송계약서 및 운행계획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상 전세버스는 구두로 계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?**

- 운행기록증과 운행계약서 및 운행계획서를 대체 할 수 있는 관계 서류(배차정보 기록, 운송수입금현황, 유류비 현황 등 운행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

□ **운행계약업체와 운행업체(대차로 운행)가 다른 경우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는 어디서 하여야 하는지 ?**

- 운행기록증은 지입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항으로 실제 배차에 따라 운행하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부착하여야 할 것임

□ **통근 등 장기계약시 1년 또는 6월 등의 기간을 설정하여 운행기록증 발급·부착이 가능한 지 ?**

- 통근·통학 등 장기운송계약에 따른 기간을 설정하여 운행기록증을 발급·부착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나, 운전자명·운행경로 등 운행기록증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발급하여 부착 운행해야 함

□ **전세버스 영업소의 경우 운행기록증 발급기관은 ?**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영업소의 관할관청은 영업소 소재지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발급해야 할 것임

**□ 모니터 등 디지털영상장치로 운행기록증 표출가능 여부 ?**

- 디지털장비로 외부에 운행기록증을 표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, 운행기록증은 운행중 상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원 차단으로 표출이 안될 경우 미부착으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

**□ 차량정비 및 우수고객 대상 무상 운송시에도 운행기록증을 발급·부착하여야 하는 지 ?**

- 차량정비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운행기록증이 필요하지 않으나, 여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함